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인영 (통일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의 입법을 추진함.

법 제15조의2 지역적응센터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절차, 자격 및 시설기준, 지정기간 등 세부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함.

법 제17조의5 및 시행령 제35조의5 우선구매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모범사업주의 신청절차, 신청요건 등 제도운영의 세부사항을 통일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해킹 등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 유출 등 신변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탈북민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통일부장관이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

법 제21조의2 및 시행령 제40조의2 탈북민 정착자산 형성 지원과 관련, 종전 근로소득자에만 한정하여 가입이 가능하였으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포함한 사업소득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법 제9조제1항의 개정예 따라, 동조 제6호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 보호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및 해외체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보호 필요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규정함.(안 제16조제1항제4호)
- 나. 법 제15조제2항 및 제4항의 신설예 따라, 기본교육과 적응교육의 업무 일부를 전문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위탁하는 경우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30조제5항)
- 다. 법 제15조의2 지역적응센터의 지정과 관련, 지역적응센터 지정절차, 기간, 취소사유 등 세부내용을 규정함.(안 제30조의2)
- 라. 법 제17조의5 우선구매와 관련, 모범사업주 지정대상자의 신청절차와 신청요건 등 세부내용을 통일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5제1항)
- 마. 법 제17조의6의 신설예 따라, 창업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교육, 현장실습,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6)
- 바. 법 제20조제6항의 신설예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주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8조의3)
- 사. 법 제21조의2 정착자산 형성 지원과 관련, 미래행복통장 가입요건 중 ‘취업하고 있을 것’의 내용을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을 것’으로 변경함(안 제40조의2제1항제2호)

아. 해킹 등으로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탈북민 주요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은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은 필요한 조치 및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2조의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노동당·내각·군·사회안전성 및 국가안전보위부”를 “노동당·내각·군·정권보위기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호대상자”를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 보호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및 해외체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4. 체류국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한 억류·감금·은둔·도피·매매혼 등의 사정이 없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제1항 중 “통일부장관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 중인”을 “통일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법 제15조제2항”을 “법 제1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표 1 제1

호의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30조제5항 후단 중 “지역적응교육”을 “해당 교육”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등) ① 지역적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 제15조제3항의 거주지 적응교육
2.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 및 진로상담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활정보제공·취업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안내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응과 관련하여 통일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적응센터는 별표 1의 자격 및 시설기준을 갖춘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지정한다. 지역적응센터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③ 지역적응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지정기간 동안의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지역적응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피지정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역적응센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피지정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피지정자의 파산, 해산 등 지역적응센터를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통일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한 지시·감독사항을 불이행 또는 위반한 경우
 5. 사업의 성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
 6. 제3호 내지 제5호에 준하여 센터를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통일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⑤ 통일부 장관은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업무매뉴얼로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적응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35조의3제2항 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제35조의5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우선구매 신청절차와 신청요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35조의6 및 제3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6(창업 지원)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의6에 따라 창업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창업 교육 훈련, 창업 현장 실습, 창업 상담, 창업 자금 지원, 경영 개선 및 판로 지원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8조의3(주거이전)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주거이전에 필요한 지원(이하 ‘주거이전 지원’이라 한다.)’은 제38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의 거주임대주택 변경, 제38조의2에 따른 공동생활시설의

이용지원 등 일시적 보호조치를 말한다.

② 법 제22조의2에 따라 신변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주거이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주지에서 신변보호를 수행하는 국방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은 통일부장관에게 주거이전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 장관은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국가정보원장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 지원 요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및 지방공사의 사장과 보호시설 관련기관의 장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통일부장관의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거이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업상태”를 “경제활동상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취업”을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을 지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근로소득”을 각각 “소득”으로 한다.

제42조의2를 제42조의3으로 하고,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해킹 등에 따른 신변위해 행위에 대한 방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해킹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등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을 위협하게 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그러한 행위를 인지한 경우에

는 보호대상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즉시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
2.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적응센터
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 또는 해킹 등 정보통신수단을 통한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 등 관련기관에 합동 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통일부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보호대상자의 보호업무를 위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보안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가정보원장 등 관련기관에 보안조치 여부에 대한 합동 확인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9조제4항제1호다목 중 “실태·보안 점검”을 “실태점검·평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의2를 제9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지역적응센터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점검 및 보안조치

6. 제35조의5에 따른 우선구매

12.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제30조의2, 제35조의3, 제35조의6, 제38조의3,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하고 제49조제4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역적응센터의 자격 및 시설기준 (제30조제5항 및 제30조의2제2항 관련)

1. 자격기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교육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단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라. 그 밖에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2. 시설기준

북한이탈주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수 거주지역 중심으로 교통편의, 안전·환경, 공공시설 이용편의성 등을 확보하고, 다음 시설조건을 충족해야함.

가. 사무실 : 45㎡ 내외의 사무전용 별도 공간

나. 상담실 : 7㎡ 내외의 상담 공간

－ 원활한 상담과 개인비밀 보호를 위한 분리 또는 방음설비 설치

다. 교육장 : 20㎡ 내외의 별도 공간

라. 기타 편의시설 : 컴퓨터, 자료실, 회의실 등 운영

마. 비상재해대피시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소화기 및 피난기구 등 시설 실정에 맞는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구비

－ 무인경비, CCTV 설치 등 시설 실정에 맞게 보안설비를 구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범위)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4조(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범위)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북한의 <u>노동당 · 내각 · 군 · 사회안전성 및 국가안전보위</u>	2. ---- <u>노동당 · 내각 · 군 · 정</u>
<u>부에서 북한체제 수호를 위하여 적극 활동한 사람으로서</u>	<u>권보위기관</u> ----- ----- ----- -----
<u>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전보장에</u>	
<u>긴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u>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제16조(보호 결정의 기준) ① 법	제16조(보호 결정의 기준) ① ---
제9조제1항제6호에서 “ <u>보호대</u>	-----그 <u>밖에</u>
<u>상자</u> 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	<u>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 공공</u>
<u>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u> ”	<u>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u>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우려, 보호신청자의 경제적 능</u>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u>력 및 해외체류 여건 등을 고려</u>
	<u>하여 보호대상자</u>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u>체류국에서 본인의 의사에</u>

②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체류국에서 억류(抑留)되거나 감금되는 등의 사유로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국내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체류국의 수용시설 등에 장기간 구금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던 경우

다. 체류국에서 은둔하거나 도피하는 등의 사정으로 정상적 또는 안정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다고 인정되

반한 억류·감금·은둔·도피·매매혼 등의 사정이 없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

<삭 제>

<u>는 경우</u> <u>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u> <u>우에 준하는 사정으로서</u> <u>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u> <u>우</u> 2. (생 략) ③ 제2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 하는 기간은 법 제9조제1항제4 호에 따른 체류국에서 생활 근 거지를 두고 있는 기간에 포함 시키지 아니한다. ④ (생 략) 제24조(협조요청 등) ① <u>통일부장</u> <u>관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 중</u> <u>인 보호대상자의 정착지원을 위</u> <u>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u> <u>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u> <u>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u> <u>받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u> <u>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한</u> <u>다.</u> ② (생 략) 제30조(사회적응교육 등) ① · ② (생 략) ③ <u>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적응</u> <u>교육(이하 “지역적응교육”이라</u>	2.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협조요청 등) ① <u>통일부장</u> <u>관은</u>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사회적응교육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법 제15조제3항</u>----- -----
--	--

한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생략)

⑤ 통일부장관은 지역적응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지역적응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적응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⑦ (생략)

<신설>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표 1 제1호의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 해당
교육-----
-----.

⑥·⑦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등) ① 지역적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 제15조제3항의 거주지 적응교육

2.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 및 진로상담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활정보제공·취업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안내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응과 관련하여 통일부 장

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적응센터는 별표1의 자격, 시설기준을 갖춘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지정한다. 지역적응센터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③ 지역적응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지정기간 동안의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지역적응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피지정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역적응센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피지정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피지정자의 파산, 해산 등 지역적응센터를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통일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

	<u>체장의 정당한 지시·감독사항을 불이행 또는 위반한 경우</u> <u>5. 사업의 성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u> <u>6. 제3호 내지 제5호에 준하여 센터를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통일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u> <u>⑤ 통일부 장관은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업무매뉴얼로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적응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u>
제35조의3(고용지원금의 지급 제한 및 반환 명령) ① (생략)	제35조의3(고용지원금의 지급 제한 및 반환 명령) ① (현행과 같음)
② 통일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을 받은 사업주에게는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u>별표</u> 에 따른 기간 동안 새로 지원하게 되는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한다.	② ----- ----- ----- ----- <u>별표 2</u>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의5(우선 구매) ①·②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35조의5(우선 구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우선구매 신청절차와 신청요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35조의6(창업 지원)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의6에 따라 창업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창업 교육 훈련, 창업 현장 실습, 창업 상담, 창업 자금 지원, 경영 개선 및 판로 지원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8조의3(주거이전)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주거이전에 필요한 지원(이하 ‘주거이전 지원’이라 한다.)’은 제38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의 거주임대주택 변경, 제38조의2에 따른 공동생활시설의 이용지원 등 일시적 보호조치를 말한다.

② 법 제22조의2에 따라 신변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주거이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주지에서 신변보호를 수행하는 국

제40조의2(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대상 및 지원금의 지급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취업상태, 자산형성의 목적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

방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은 통일부장관에게 주거이전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국가정보원장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 지원 요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및 지방공사의 사장과 보호시설 관련기관의 장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통일부장관의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거이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40조의2(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대상 및 지원금의 지급 등) ① -----

----- 경제활동상태 -----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서 보호대상자에게 출산 또는 병역의무 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주지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생략)
2.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3개월 이상 취업
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보호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제49조제5항에 따라 정착자산형성을 위한 적립과 관련된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매월 적립하여야 한다.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features ten identical rows of horizontal dashed lines, each consisting of three parallel lines. The first row has a small black dot at its beginning, serving as a starting point for writing. The remaining nine rows are completely blank. The entire page is white, providing a clear background for practicing letter formation and alignment.

1. (현행과 같음)
2. -----
-----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을 지속-----

②

소득

1. ~ 4. (생략)

③ ~ ⑤ (생략)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은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1. (생략)

2.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 본인의 근로소득이 아닌 금액으로 적립을 한 경우

3. 4. (생략)

⑦ · ⑧ (생략)

<신설>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현행과 같음)

2. -----
-- 소득-----

3. 4. (현행과 같음)

⑦ · ⑧ (현행과 같음)

제42조의2(해킹 등에 따른 신변위해 행위에 대한 방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해킹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등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그러한 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즉시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제42조의2 (생략)

정착지원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

2.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적응센터

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 또는 해킹 등 정보통신수단을 통한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 등 관련기관에 합동 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통일부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보호대상자의 보호업무를 위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보안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가정보원장 등 관련기관에 보안조치 여부에 대한 합동 확인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의3 (현행 제42조의2와 같음)

제4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 ③ (생략) 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재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적응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나. (생략) 다. 지역적응센터에 대한 운영 <u>실태·보안 점검</u> <u><신설></u> 2. ~ 5. (생략) <u><신설></u> 6. ~ 10. (생략) 11. 제47조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u>여부 결정</u> <u><신설></u> ⑤ (생략)	제4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 <u>실태점검·평가</u> 라. <u>지역적응센터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점검 및 보안조치</u> 2. ~ 5. (현행과 같음) 6. 제35조의5에 따른 우선구매 7. ~ 11. (현행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u><삭제></u> 12.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u>교육지원</u> ⑤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통일부 정착지원과	
연 락 처	(02) 2100 - 5928